대법원 2018도2844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5. 11. 가수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신해철의 진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과 이러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의사인 피고인은 2014. 10. 17. 자신의 병원에서 피해자 망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였음
- 위 수술 후 피해자에게 복막염 등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수술에 따른 통상적 회복과정인 것처럼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10. 27. 서울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낭압전에 따른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국내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게이트(www.medigate.net) 게시판에 '의료계 해명자료'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 수술과 과거 수술 이력, 관련 사진과 같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게시하였음

▣ 원심의 판단

● 유죄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의사인 피고인에게 수술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는지 여부

▣ 구 의료법상 누설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수술 이후 피해자가 강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 상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열, 메슥거림, 심한 복통, 높은 백혈구 수치, 빈맥 증상 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막염을 예견하여 이에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

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로써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여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

▣ 이와 같이 형성된 신뢰관계는 환자가 사망한다고 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의료정보와 같은 환자의 비밀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으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의료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3. 판결의 의의

▣ 의사에게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종전 판례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의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임

▣ 의료인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과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이 원칙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상 누설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임